

정관변경허가서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정관 중 「민법」 제42조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정관

제3조중 “서울특별시”를 “경기도 성남시 위례광장로19 아이페리온 402호”로 한다.

제4조제5호중 “회원의”를 “회원 및 건설기술인”, “계속교육(CPD)”를 “교육”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끝단에 “, 건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의 임원급으로 협회의 교육 및 기술 전파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추가 한다.

제12조에 제5호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및 제6호 “직접 회장을 제외한 회장 역임자는 고문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21조제2항중 “회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을 추가한다.

제22조중 “3년”을 “1년”으로, “정과”를 “경과”로, “시에는”을 “시까지”로 하고, “유지하고 있어야”를 추가한다.

제23조제1호중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제2호는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

“제6장 대의원 총회”는 “제6장 총회 특례 및 제척”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는 삭제한다.

제29조중 “대의원 총회소집권자”는 “총회소집권자”로 하고 “대의원 총회”는 “총회”로 한다.

제36조중 “제8호 여성위원회”를 신설한다.

제38조제5호중 “회원”은 “회원 및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건설기술인의 교육운영” 추가, “회원의”를 삭제하고 제8호를 신설한다.

제42조제3항중 “제37조 제2항의”를 “제38조”로 한다.

제48조제4호중 “기술사 연속교육(CPD)”를 “기술사 연속교육(CPD) 및 건설기술인 교육”으로 한다.

제54조, 제57조 및 부칙 제1조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중 제1항을 삭제한다.

제58조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